

#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합의결과서

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9조의2,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.

|   |  |
|---|--|
| 1. 공사내용   |  |
| 공사명   | 평택가재지구 공동2 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|
| 공사 장소(주소)   |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2 블럭  |
| 공사의 종류  | 공동주택 (V) 건축물( ) 도시철도( )  |
| 2.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  |  |
|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  | "상세 합의 결과" 참조  |
| 중계장치 설치 위치  | "상세 합의 결과" 참조  |
| 접지단자 위치   |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  |
|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  |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(총용량4kW 이상, 교류 220V, 단자 3개 이상)  |
| 3. 공동주택(500세대 이상)에 대한 사업주체의 합의결과 게시 방법  |  |
|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 | 건본주택 및 단지모형도에 설치위치 표현  |
|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   |  |
| ※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,<br>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합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. |  |
| 4.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 | 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(변경)승인서 사본 1부 제공<br>② 착공설계 신청 전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(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)<br>③ 건축물의 착공/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|
| 5.기타 합의사항   | "상세 합의 결과" 참조  |


※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,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

[첨부]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.

상기 합의내용 이외의 것은 "전기통신사업법", "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"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합의하였음.

2022년 09월 26일

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구분  | 법인/단체명(상호)      | 대표자(성명)       |
| 건축주 | 주식회사씨지주택        | 이승재           |
| 대리인 | 주식회사 건축사사 무소 미작 | 김동수<br>(인동의함) |

기간통신사업자 합의대표  
  
 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 
 한국전파진흥협회

# 상세 협의 결과

## 1.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

1. 옥상층 : 104동, 106동, 110동, 112동

## 2. 중계장치 설치 위치

1. 옥상층 : 104동, 106동, 110동, 112동  
2. 지하2층 : 104동 PIT, 106동 PIT, 108동 PIT, 110동 PIT

## 3. 기타 협의사항






- 상호 협의결과서 제4항 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 
- 건축주등\*이 필수로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 (신청내역서의 "착공통보" 창에 등록)
  - ① 인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
  - ② 정보통신 착공도면 1부
  - ③ 착공예정일
  - ④ 준공예정일
  - ⑤ 공사요청일
  - ⑥ 공사현장담당자 (이름, 연락처 등)\*건축주등 : 건축주 외 건축사, 건설사, 통신설계사, 시행사, 시공사 등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 협의를 대표한 자
- 중계설비 설치시기 : 건축주 공사요청일 ~ 건축물 준공검사 이전에 설치를 하여야 함  
※ 착공 후 준공예정일을 입력하지 않거나 준공에 임박하여 입력하는 경우, 이동통신사 중계설비의 공사물자 확보(최소5개월 소요)가 불가하여 공사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.
- 아래 <<주의사항>>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<<주의사항>>

- ※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는 상호협의결과서 내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치 위치와 도면 상의 위치가 일치하는 지 확인 후 "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위치 공개 방법의 예시"를 참고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이동통신설비 설계도서가 시공사(건설사)에게 반드시 전달 되어, 건축물에 선로설비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.

#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위치 공개 방법의 예시

※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위치 공개 이후 설계변경 또는 현장시공 단계에서 협의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, 사업주체는 변동사항을 입주예정자(계약자)에게 재공지 하여야 함.

| 게시구분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게시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| 예시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건<br>본<br>주<br>택 | 모델<br>하우스                    | ① 단지 모형도에 "이동통신중계설비" 표지판 부착 |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견본주택 내 "상호협의결과서" 게시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  | 사이버<br>견본 주택/<br>인터넷<br>홈페이지 | ① 단지 조감도에 중계설비 설치<br>동 표시   |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홈페이지 내 상호협의결과서<br>제공      |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팝업창<br>게시      |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입주자모집<br>공고문                | <p>● "유의사항" 등에 협의결과에 따른 <b>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 위치(해당 동 등)</b>를 빠짐없이 기술 할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9조의2 및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의2 등에 의거,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.</li> <li>·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,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.</li> <li>·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<br/>-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: 101동, 104동, 108동 옥상층 및 화단 등 지상 일부 구간, 지하주차장 102동 헬룸, 105동 동통신실</li> </ul> |